

1

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

1

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❖창업벤처과(☎601-5150)

□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

- (사업개요) 중소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
- 지원내용
 - (중소·중견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) 기업 당 총 사업비의 60%*지원, 신규구축 최대 1.2억원, 고도화 최대 1.8억원(예산 소진시까지)
 - * 정부출연금 50%지원, 부산시 10% 지원(협약 후 5%, 사업종료 후 5%)
 - (스마트공장 구축 사전 진단·분석 컨설팅 지원) 기술위원이 1일 2시간, 하루 방문 컨설팅 실시

□ 「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」 지원

- (사업개요)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,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 육성
- (지원내용)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
 - (R&D)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(최대 20억원, 4년),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(최대 5억원, 2년), 연구인력 채용(최대 1.5억원, 3년) 등 지원
 - (금융) 중진공 정책자금(최대 100억원, 금리우대), 기보 보증(최대 30억원, 보증료 감면), 전용펀드(20억원),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등

□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 지원

- (사업개요) 성장 가능성 높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
- (지원분야) 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 3개 분야

지원분야	세부 지원 내용
컨설팅	기술컨설팅, 경영컨설팅, 규제대응컨설팅, 재기컨설팅
기술지원	시제품제작,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, 기술이전 및 지재산 획득, 규격인증, 제품시험, 설계
마케팅	마케팅 및 시장조사, 패키지디자인 개선, 브랜드 지원, 홍보지원

□ 해외 출입국 중소기업 애로 해소

- ① (격리면제 검토) 해외기업이 국내 중소기업과 계약, 투자, 기술지원 등 중요한 사업목적으로 한국 입국 시 14일간의 격리*를 면제
 - * 격리면제자는 임시격리시설(1박2일)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이면 최종 면제
 - (처리절차) 지방중기청(1차 검토) → 중기부(최종 검토) → 외교부·중소기업 → 재외공관 * (처리기간) 14일 이내
 - (실적) 19개사 38명 (기술지원 17개사 36명, 계약체결 2개사 2명)
- ② (전세기 수요조사) 범정부 기업 입국애로 TF*가 추진하는 전세기** 이용 안내 및 수요조사
 - * 국조실·중기부·외교부·산업부·국토부·복지부 참여
 - ** 인도 뉴델리(7.9 출발 확정), 중국 광둥성 및 베트남 7월중 출발 예정

□ 화상 수출상담회 추진

- (개요) 상반기 취소된 전시회 피해기업 및 브랜드K 등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지원을 위해 수출지원기관(중진공, 중앙회, 무협)과 협업으로 화상 수출상담회 추진
 - 지원기관별로 지원대상 및 진출시장을 분담하여 BrandK, 소부장, 신남방진출 희망기업 등 국내기업 수요에 따라 주제별 개최
- (기간·규모) 4월 ~ 7월, 총 10회* 개최(약 500개사 지원)
 - * 중진공 4회, 무협 4회, 중앙회 2회 (회당 50여 개사 참여)
- (지원내용) 홍보자료 제작, 바이어 매칭, 통역, 신용조사, 샘플비 등 기업당 6백만원 이내 지원
- (향후계획) 올해 12월까지 연장 및 확대 추진(중기부)

□ **수출바우처 지원**(3차 추경)

- (목 적) 수출중소기업 규모·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
- (지원규모) 341억원, 900여개사 ('20년 본예산 997억원)
- (지원내용) 디자인개발, 홍보, 바이어 발굴, 해외전시회, 인증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식(바우처)으로 지원
- (지원대상 및 조건)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최대 지원금 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

구 분	지원대상	지원한도	지원비율
수출초보기업	전년도 수출 '10만불 미만'	30백만원	.매출 100억원 미만 : 70% .매출 100~300억원미만: 60% .매출 300억원 이상 : 50%
수출유망기업	전년도 수출 '10~100만불 미만'	50백만원	
수출성장기업	전년도 수출 '100~500만불 미만'	80백만원	
글로벌강소기업	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유효기업	100백만원	

- (추진일정) 사업공고(7.20), 신청·접수 및 평가(~9.25), 협약체결(9.30)

□ **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지원**(3차 추경)

- (목 적)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비즈니스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비대면(온라인) 방식의 수출지원 강화
- (지원규모) 90억원, 약 2,200개사 ('20년 본예산 359억원)
- (지원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업종이 지원 제외 대상 업종(도박, 주류,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)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
- (지원내용) 기업 규모별 지원액 차등 지원
 - * 항공운임 보전(670개사) : 내수/초보 5백만원, 유망/성장 7백만원, 강소 10백만원
 - * 쇼핑몰 구축(30개사) : 초보 20백만원, 유망 40백만원, 성장 70백만원, 강소 100백만원
 - * 판매대행(1,524개사) : 기업당 300만원
- (평가절차) 항공운임(서류), 쇼핑몰/판매대행(서류, 대면, 현장점검)
- (추진일정) 공고(7월), 참여기업 선정(~ 8.17), 지원(~ 11월)